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 고 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:)		
④ 사업의 종류		(운영형태:)		
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				
⑥ 신 고 내 용				
⑦ 그 밖에 필 요 한 사 항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· 도 지 사 귀하				
첨 부 서 류	구 분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확인사항	
	운행개시신고의 경우	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책임 보험등,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 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	자동차등록증(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합니다)	
	법인의 설립·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	없 음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			수수료	없 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고인(대 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

이 신고서(신청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